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조성윤 / 안전도시연구팀장

주필주 / 안전도시연구팀 초빙연구위원

서민경 / 안전도시연구팀 초빙연구원

배경과 목적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정책제안

- 재난유형별, 재난단계별, 취약요인별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부서 차원의 종합적인 재난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내 장애인 재난안전 부문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 의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상시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비상시 긴급대피 및 응급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난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장애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위험사회와 재난불평등

◆ 포용적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증가

- 부모가 없는 사이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고 지병과 생활고를 비판한 일가족과 노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및 독거노인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
- 기록적인 장마와 국가 초유의 신종감염병 확산 사태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최근 재난피해가 불운이 아닌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선택적 배려가 아닌 제도적 책임으로서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재난취약계층은 재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의미하며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재난 대피, 대응, 정보획득이 어려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재난취약계층은 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와 노출도가 높아 재난피해를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받기 쉬우며 자력으로 피해를 수습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은 일시적 생활 곤란이 아닌 장기적 궁핍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령이 미흡하여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이 부족한 실정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취약계층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 및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김도형 외, 2017)¹⁾.
-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재난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수의 법령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동법 행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3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을 재난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숙자, 다문화가족, 만성질환자를 비롯하여 지리적, 문화적으로 고립된 사람,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인천광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체계

□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인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저하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는 총 266개이며 이 중 15개가 인천광역시 조례인 것으로 조사됨²⁾.
- 지역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나 전기·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교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재난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단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제한적 사업만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재난안전이 비중있게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재난유형별, 취약요인별 지원 방안이 부족하여 위기상황 시 재난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재난복지 실현으로 재난안전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표 1]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중구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2021.06.30.
동구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2020.09.28.
동구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	2022.10.31.
연수구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	2022.10.06.
남동구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	2022.11.17.
부평구	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2018.10.01.
계양구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2018.12.21.
서구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환경안전국 안전총괄과	2018.03.05.
강화군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2017.10.19.
옹진군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담당관	2018.11.1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외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재난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화재취약계층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결과임.

2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전략

◆ 장애인의 취약특성

□ 복합적 취약특성에 따른 재난피해 가중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 유형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총 15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장애인은 다른 재난취약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취약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 또는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큰 피해를 입기 쉽다는 특징이 있음.
- 실제로 화재 발생 시 장애인 사망률은 57.4%로 비장애인 사망률 12.1%보다 약 4.7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오승연 외, 2018).
- 또한, 장애인은 질병 및 상해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표 2]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취약특성

구분	이동		의사소통		시각정보 취득	활동보조인 필요
	수평이동	수직이동	일반소통	음성소통		
지체장애	●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출처: 강정배·김태용(2020),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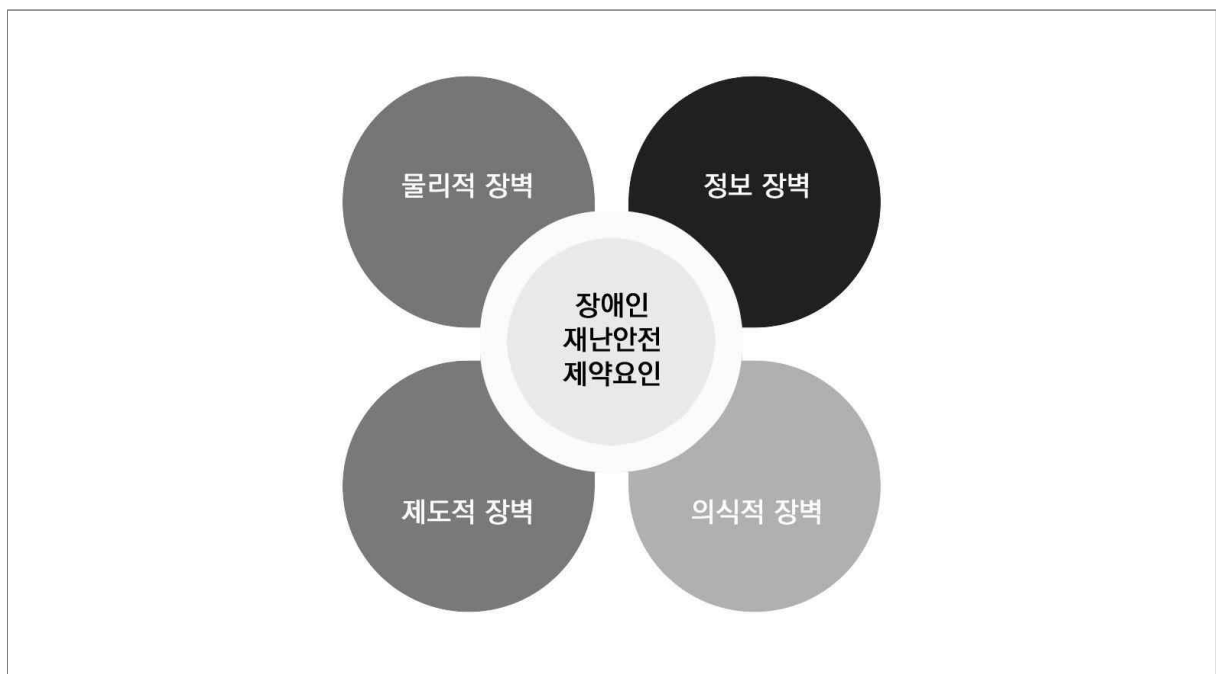
* 장애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의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

□ 장애인 재난안전 제약요인의 종합적 개선 필요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취약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비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휠체어 피난로 설치나 수화나 자막을 활용한 긴급재난정보 제공과 같은 제한된 재난안전관리 전략이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안전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장애인의 재난안전 여건 개선 및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가지는 물리적 장벽, 정보의 장벽, 제도적 장벽, 의식적 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 장애인 백서에 따르면 물리적 장벽은 보도 턱, 도로 장애물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 제한을 의미하며 정보 장벽은 점자, 수화, 자막방송, 음성안내의 미흡 또는 부재로 인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제도적 장벽은 장애로 인해 사회경제적 편의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적 장벽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물리적 장벽, 정보의 장벽, 제도적 장벽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재난안전관리는 시설물 개선과 정보전달체계 확대에서부터 공공정책의 포용성 강화와 시민의 식 고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림 1] 배리어프리의 핵심 기준



출처: 김영배(2015), 일본의 재해 시 장애인 대피에 관한 연구 <그림 2> 수정

□ 재난안전사고 발생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 필요

- 재난안전 예방, 대응, 복구 단계에서 요구되는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항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상 및 피해 수습 위주의 획일화된 정책이 추진되어 유사 재난안전사고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전략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재난안전 매뉴얼의 현실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 장애인 재난안전사고 피해 저감 및 대응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에는 장애인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긴급연락처,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와 양, 신체장애요인, 긴급연락망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재난안전 대비카드를 작성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상시 안부 확인과 위기상황 시 피난 행동 지원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사전교육과 반복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안내, 활동보조인 지원, 이동수단 및 의약품 제공을 통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부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사고 발생 후에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생활 여건 개선을 돕고 유관기관 또는 봉사단체를 통한 긴급구호물품 보급 및 생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대출 및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2] 재난안전 대비카드 예시

① 재난 시 대비카드			
이름		장애 유형 장애 상태	이제장애 수용 할지 여부를 사후처리 결과 포함
지원자 (1순위)	이름 관계	연락처	
지원자 (2순위)	이름 관계	연락처	
주 진료 병원	병원 이름 진료과	연락처 주치의	
이동 방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이동 <input type="checkbox"/> 업고 이동 <input type="checkbox"/> 피난 의자 <input type="checkbox"/> 침대 또는 시트 이동		
이동 시 주의 사항			

② 집안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망			
이름(관계)	연락처	이동 시간	연락 가능 시간
이현서(동생)	010-0000-0000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밤 <input type="checkbox"/> 낮/밤 모두 가능
김이영(교회 목사님)	010-0000-0000	도보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밤 <input type="checkbox"/> 낮/밤 모두 가능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밤 <input type="checkbox"/> 낮/밤 모두 가능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밤 <input type="checkbox"/> 낮/밤 모두 가능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밤 <input type="checkbox"/> 낮/밤 모두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2022), 재난안전 가이드

3 장애인 현황 분석

◆ 전국 장애인 집계현황

□ 전국 등록장애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 2021년 전국 등록장애인은 2,644,7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3%를 차지하며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시·도별 등록장애인 수는 경기도가 578,6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라남도(약 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등록장애인의 51.3%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전체인구 고용률 61.2%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장애인 실업률은 7.1%로 전체인구 실업률인 4.0%보다 약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됨(에이블뉴스, 2022.01.26.).

[표 3] 최근 10년(2012-2021) 전국 시·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서울	407,528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392,920	394,843	394,190	392,123
부산	170,743	169,750	168,663	168,084	168,950	171,384	173,820	175,378	176,293	176,451
대구	116,839	116,567	115,983	115,694	117,111	119,766	123,070	125,485	126,398	127,282
인천	133,467	133,778	133,855	134,191	135,623	138,304	141,771	144,574	146,321	148,646
광주	68,534	68,372	68,288	68,079	68,569	69,233	69,884	70,177	70,061	69,819
대전	71,647	71,441	71,198	70,890	71,425	72,180	72,927	73,222	72,853	72,489
울산	48,982	48,950	49,014	49,326	49,533	50,205	50,640	51,014	51,122	51,330
세종	7,081	7,202	7,943	9,079	9,845	10,623	11,404	12,046	12,346	12,630
경기	505,519	506,464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47,386	559,878	569,726	578,668
강원	100,579	99,660	98,970	98,324	98,928	99,959	100,693	101,484	101,615	101,714
충북	94,137	93,563	93,612	93,536	94,688	95,844	97,086	97,688	97,932	97,839
충남	124,872	124,561	124,721	124,801	126,406	128,503	131,910	133,724	134,250	134,749
전북	133,054	132,006	130,932	129,769	130,345	131,303	131,746	132,364	132,207	132,057
전남	145,788	144,324	143,128	141,837	141,578	142,174	142,213	141,888	140,942	139,868
경북	169,699	168,836	168,650	168,089	169,643	172,533	176,550	180,898	181,366	182,538
경남	180,285	179,530	179,276	179,070	180,665	183,510	186,016	187,968	188,749	189,621
제주	32,405	32,673	32,989	33,510	34,278	35,104	35,840	36,287	36,655	36,87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1), 시·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 및 주민등록인구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집계현황

□ 지역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상이

-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수는 148,646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며 8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동구, 남동구, 부평구를 제외한 7개 군·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10년 전과 대비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등록장애인 수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26,976명, 26,6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비율은 강화군이 약 8.4%로 가장 높고 연수구가 약 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등록장애인 중 남성 비율은 59.5%로 여성보다 높았으며 경증장애인(64.0%)이 중증장애인(36.0%)에 비해 약 1.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중 34,618명(23.3%)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7,414명(5.0%)이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조사됨(인천시 내부자료, 2021).

[표 4] 최근 10년(2012-2021) 인천광역시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33,467	133,778	133,855	134,191	135,623	138,304	141,771	144,574	146,321	148,646
중구	5,099	5,368	5,424	5,372	5,363	5,453	5,626	6,061	6,243	6,525
동구	4,951	4,872	4,763	4,610	4,519	4,536	4,544	4,638	4,728	4,772
미추홀구	21,097	20,918	20,658	20,408	21,012	21,748	22,222	22,473	22,729	23,356
연수구	11,567	11,630	11,746	11,821	12,085	12,242	12,706	13,321	13,843	14,022
남동구	22,680	22,560	22,896	23,725	24,014	24,667	25,551	26,112	26,482	26,656
부평구	27,447	27,232	27,031	26,890	26,790	26,956	27,146	27,112	26,884	26,976
계양구	14,174	14,213	14,155	14,093	14,110	14,277	14,400	14,452	14,539	14,895
서구	20,047	20,461	20,606	20,664	21,005	21,524	22,539	23,049	23,449	23,988
강화군	5,032	5,099	5,134	5,162	5,258	5,427	5,537	5,831	5,878	5,890
옹진군	1,373	1,425	1,442	1,446	1,467	1,474	1,500	1,525	1,546	1,56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0),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 등록현황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1년 장애인등록현황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45.71%)이 가장 많고 다음은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신장, 정신, 자폐성, 언어, 장루·요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지체, 심장, 호흡기, 안면, 뇌전증을 제외한 장애유형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재난안전정책이 다소 제한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장애인 분포 특성과 장애유형별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난취약성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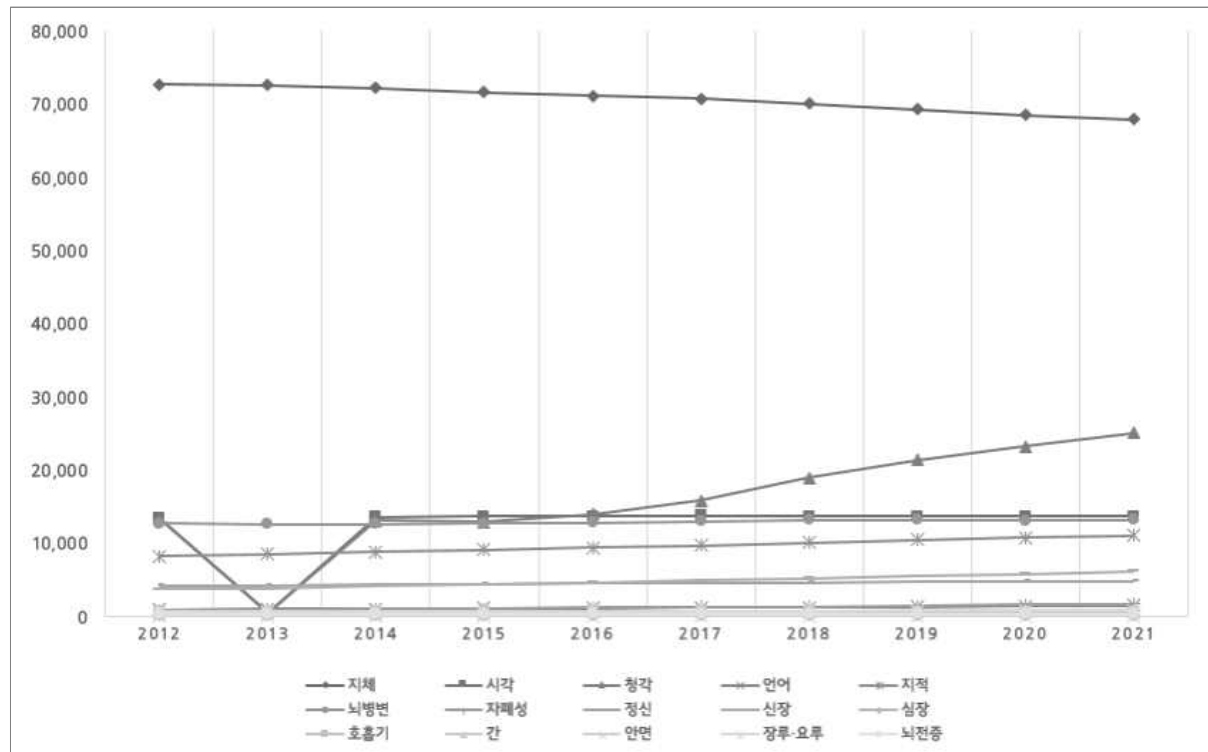
[표 5] 최근 10년(2012-2021) 인천광역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2012	72,765	13,483	13,473	1,007	8,294	12,761	920	4,248	3,769	307
2013	72,618	577	566	1,034	8,597	12,687	998	4,312	3,922	277
2014	72,212	13,626	13,133	1,088	8,898	12,661	1,050	4,357	4,162	249
2015	71,692	13,696	12,997	1,164	9,178	12,800	1,121	4,486	4,414	224
2016	71,149	13,768	13,995	1,193	9,487	12,824	1,230	4,570	4,692	223
2017	70,758	13,786	15,833	1,272	9,786	13,068	1,331	4,679	5,020	224
2018	70,119	13,756	18,957	1,319	10,104	13,224	1,415	4,707	5,297	237
2019	69,378	13,754	21,436	1,414	10,521	13,245	1,513	4,813	5,574	243
2020	68,536	13,727	23,237	1,488	10,823	13,190	1,656	4,832	5,868	258
2021	67,942	13,751	25,128	1,543	11,065	13,252	1,806	4,865	6,239	26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0),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 등록현황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1년 장애인등록현황

[그림 3] 최근 10년(2012-2021) 인천광역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변화 추이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0),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 등록현황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1년 장애인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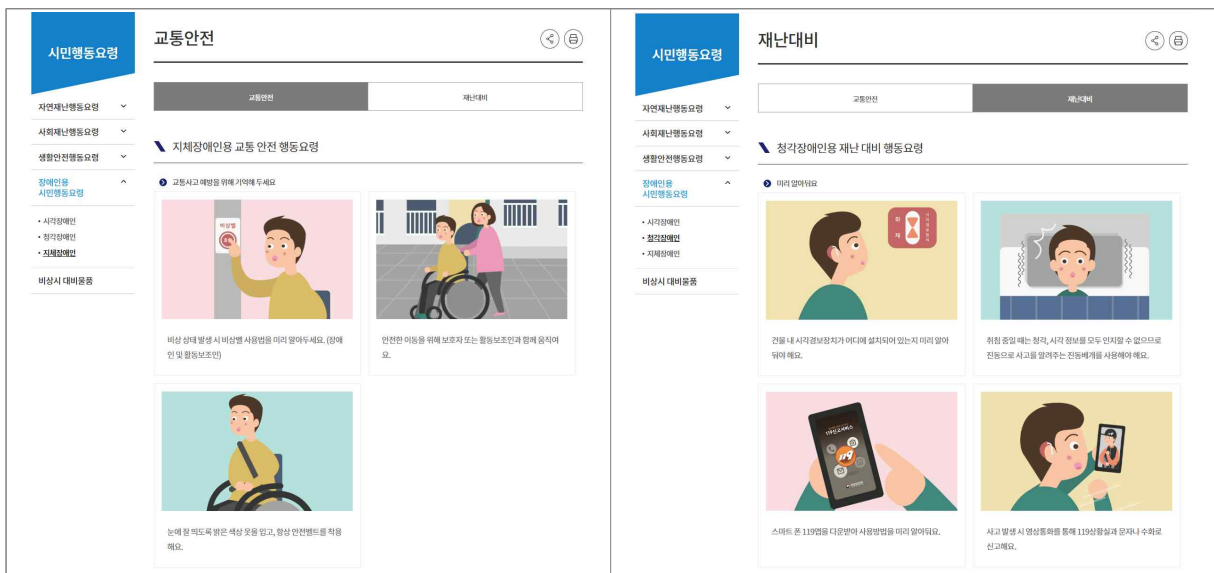
4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조사

◆ 국내 사례

□ 행동요령 중심의 정보 제공

- 2022년 기준,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자연재난 행동요령 21종, 사회재난행동요령 28종, 생활안전행동요령 14종, 비상대비행동요령이 이미지 및 영상 자료와 함께 제공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의 경우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재난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를 위한 ‘장애인용 시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그림 4] 인천광역시 장애인용 시민행동요령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장애인용 시민행동요령(<https://www.incheon.go.kr/safe/SAFE020401>)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 201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발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사항과 재난 발생 시 거주 시설 유형에 따른 피난 지침을 제시하여 시설 특성에 맞춘 자체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당 매뉴얼의 경우 지체, 청각, 시각, 지적, 중증, 장애 영·유아 등의 거주 시설별 피난 관리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애 유형에 대한 정의와 피난 절차(초기대처, 피난준비, 피난개시, 피난도중, 피난종료, 피난 및 인명 확인)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장점이 있음.

- 2017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8종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함.
-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는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와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자력대피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4개의 그룹(시각장애인, 지적·자폐성장래인, 지체·뇌병변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음.
- 장애인과 지원자의 주요 활동공간인 장애인 이용시설, 거주시설, 학교 등에서의 재난 발생 전 준비사항, 재난 발생 시 세부 행동요령, 재난 발생 후 조치사항, 재난대응 훈련 시나리오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점자 형태로 제작하고 부산시립도서관과 협력하여 보이스 방식 안내서를 개발하는 등 내용의 효율적 습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그림 5] 행정안전부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 2018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을 발간함.
- 지체, 청각, 시각, 지적, 내부기능, 정신장애의 6가지 장애유형별로 재난 시 어떤 취약요인이 있는지,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활동보조인 등 비장애인의 역할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웰페어뉴스, 2019.01.16.).

-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를 시작으로 계단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의미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 5가지 유형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1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2014년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지체장애인용」과 2016년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2021년에는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과 동영상 23편을 제작함.
 - 관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지체장애인용」을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체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를 부록으로 추가하여 위기상황 시 지체장애인의 의사전달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은 당시 국민안전처 국민행동요령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구성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맹(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용 점자 매뉴얼과 저시력자(잔존시력이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용 매뉴얼을 통합하여 제작하였으며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음성 녹음파일도 함께 제공함(용인신문, 2016.05.12.).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 29명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음성안내, 수어, 자막을 추가하고 QR코드를 제공하는 등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임.

[그림 6] 서울특별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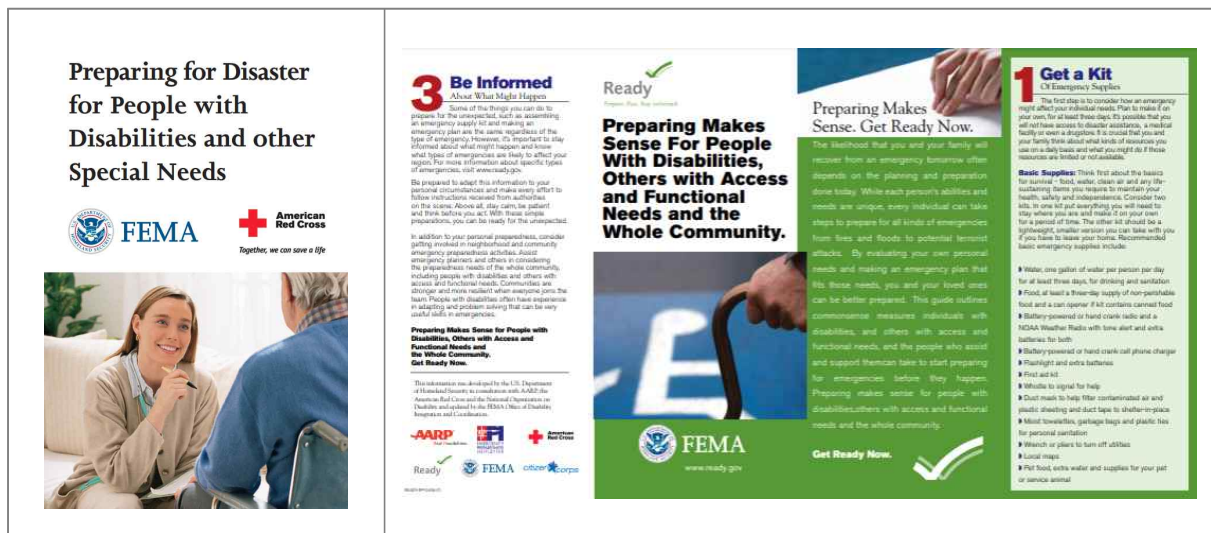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p>발간등록번호 11-2019-00000-01</p> <p>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 지체장애인용 -</p> <p>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p>	 <p>발간등록번호 11-2016-00111-01</p> <p>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p> <p>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p>	 <p>코로나19 입회 이민 이거낼 수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울시민의 함께 만든 코로나19 대응 장애인우호형 동영상이</p> <p>I-SEOUL U</p>

● 국외 사례

□ 미국: 포괄적 재난대응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미국의 장애인 대상 재난대응 및 준비과정은 장애인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은 연방재난관리청과 전국장애협회와 같은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됨.
- 장애인 고용 정책 사무국을 통해 장애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법·규정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연방재난관리청, 국토보안준비캠페인,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안전정보, 소방안전청 등에서도 재난대응 매뉴얼과 지침을 공개하고 있음(최복천 외, 2015).
- 2004년 적십자와 연방재난관리청이 함께 제작한 「장애인과 특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Preparing for Disas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Special Needs)」는 장애인 스스로 준비해야 할 사항, 장애인 재난지원 커뮤니티 기본조직 구성, 재난 대비에 대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대피소 계획 가이드, 비상용품 도구 샘플, 초동 조치 가이드 등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있음(김희규 외, 2019).
- 재난 발생 시 행동 지침으로는 국토안보부가 은퇴자협회, 장애인협회, 적십자 등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장애인과 기능적, 접근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한 이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에 이해를 위한 준비(Preparing Makes Sens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thers with Access and Functional Needs and the Whole Community)」가 있음(정태호·오소윤, 2018).
- 미국의 경우 매뉴얼 발간 전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해 실효성을 검증하며 매뉴얼 발간 후 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진행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김희규 외, 2019).

[그림 7] 미국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사례



□ 일본: 지역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 강화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재난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 있음(김희규 외, 2019).
- 일본은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 제26조를 통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상태 및 생활 실태에 따라 방재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2006년 발표된 「재해시요원호자의 피난지원가이드라인(災害時要援護者の避難支援ガイドライン)」에 따르면 재난취약계층 지원은 자조(自助)와 지역사회 차원의 공조(共助)를 기반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전달 및 피난지원계획 수립의 역할을 담당함(災害時要援護者の避難対策に関する検討会, 2006).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 및 「피난행동요지원자의 피난행동 지원에 관한 조치 방침(避難行動要支援者の避難行動支援に関する取組指針)」 개정을 통해 피난행동 요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거가족, 긴급연락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개별피난계획(個別避難計画)을 작성하도록 권고함(内閣府, 2021).

[그림 8] 일본 재난대응 안내서 사례

재해시요원호자 피난지원 가이드라인	피난행동요지원자 명부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災害時要援護者の避難支援 ガイドライン</p> <p style="text-align: center;">平成18年3月</p> <p style="text-align: center;">災害時要援護者の避難対策に関する検討会</p>	<p style="text-align: center;">避難行動要支援者名簿(例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8px;">番号</th> <th style="font-size: 8px;">氏名</th> <th style="font-size: 8px;">生年月日</th> <th style="font-size: 8px;">性別</th> <th style="font-size: 8px;">郵便番号</th> <th style="font-size: 8px;">住所又は居所</th> <th style="font-size: 8px;">電話番号 その他の連絡先</th> <th style="font-size: 8px;">避難支援等を必要とする事由 (障害、要介護、難病、療育) の種別</th> <th style="font-size: 8px;">障害等級、要介護状 態区分、療育判定等</th> <th style="font-size: 8px;">その他</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番号	氏名	生年月日	性別	郵便番号	住所又は居所	電話番号 その他の連絡先	避難支援等を必要とする事由 (障害、要介護、難病、療育) の種別	障害等級、要介護状 態区分、療育判定等	その他																																																																																																																																																																																														
番号	氏名	生年月日	性別	郵便番号	住所又は居所	電話番号 その他の連絡先	避難支援等を必要とする事由 (障害、要介護、難病、療育) の種別	障害等級、要介護状 態区分、療育判定等	その他																																																																																																																																																																																																

5 정책제언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재하며 비장애인 관점에서 전문 용어 위주로 제작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강정배·김태용, 2020).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1년 사회서비스원에서 취약계층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인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은 없는 실정임.
- 재난유형별, 재난단계별, 취약요인별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 제작 시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인,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비장애인 관점에서 개발된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건강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재난안전정책과 주택정책,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여 정책의 공백 및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장애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상태, 주거형태, 자력대피 가능 여부, 재난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내 장애인 재난안전 부문을 강화하고 기관 및 시설 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통합적 재난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방, 경찰, 의료 초동대응 요원들에게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평상시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비상시 긴급대피 및 응급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 담당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를 옹호, 대변,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소재파악, 생활안전 관리, 신속한 정보전달, 대피속도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효성 높은 재난복지정책 추진

-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영세공장, 쪽방촌 등 재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지원 사업³⁾을 실시하여 재난의 반복적 발생 및 피해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요 편의시설, 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재 사용, 수직·수평피난계획 수립 등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재난 발생 시 우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구호키트를 배포하고 재난안전 대피카드 작성, 긴급연락망 및 대피소 정보 숙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내 장애인 재난안전 부문을 강화하고 기관 및 시설 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통합적 재난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방, 경찰, 의료 초동대응 요원들에게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평상시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비상시 긴급대피 및 응급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 담당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를 옹호, 대변,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소재파악, 생활안전 관리, 신속한 정보전달, 대피속도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난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전문가, 실무자, 주민 협의체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에서 재난 취약요인 개선 및 장애인 지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자율방범조직을 활성화하여 계절별 주요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제약요인 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현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동체적 연대의식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호우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관로 개선, 투수성 보도블록 적용,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가스감지센서 보급, 응급호출 장비 설치, 폭염·한파피해 저감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전기요금 지원, 감염병 피해저감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확대, 마스크 보급, 범죄피해 저감을 위한 CCTV 설치, 야간순찰 강화 등이 포함됨.

▶ 참고문헌

[보고서/학술지]

- 강정배·김태용(2020),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도형 외(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김수동 외(2017), 재난취약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교연구-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대상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 13(2), 155-162.
- 김영배(2015), 일본의 재해 시 장애인 대피에 관한 연구: 한국 장애인 복지에의 함의.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 외(2019),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응 서비스 기술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김정은 외(2019), 장애인 재난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탐색. 인문사회 21, 제10권 제5호.
- 김희규 외(2019),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김희규·정태호(2020),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및 재난훈련 시나리오 개발. 재난안전 제22권 제1호.
- 두오균(2017), 장애인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7(8), 61-84.
- 모영배(2010),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삼 외(2019),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오승연 외(201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방안. 보험연구원.
- 전근배(2020), 국가의 거리: 코로나19의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제68호.
- 조성윤(2020), 인천 안전도시 진단: 재난취약계층 지원 방안, 인천연구원.
- 정태호·오소윤(2018), 장애인 취약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최복천 외(201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4),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 보건복지부(2022), 재난안전 가이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2018),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지체장애인용.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 인천시 내부자료(2021),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
- 행정안전부·한국장애인인권포럼(2018),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 災害時要援護者の避難対策に関する検討会(2006), 災害時要援護者の避難支援ガイドライン.
- 内閣府(2013), 避難行動要支援者の避難行動支援に関する取組指針.
- 内閣府(2021), 避難行動要支援者の避難行動支援に関する取組指針(令和3年5月改定).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1년 장애인등록현황.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70201/2068367>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장애인용 시민행동요령 <https://www.incheon.go.kr/safe/SAFE020401>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1), 시·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0),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 등록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2012-2021), 주민등록인구.

[보도자료/신문기사]

미디어생활(2021.01.13.), 서울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24>

스냅타임(2022.01.19.), [인터뷰] “메르스 사태 잊었나? 장애인 인권 더욱 악화”.

<http://snaptime.edaily.co.kr/2021/04>.

에이블뉴스(2020.09.10.), 인천시, '장애인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3620200910100301409651#z>

용인신문(2016.05.12.), 점자, 안전이 되다! 서울시,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http://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43243>

웰페어뉴스(2019.01.16.),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발간.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337>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